

창원지방법원 2022. 1. 14 선고 2021나525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, 김연정, 김제헌,

임승현, 추은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민기, 김도형

피고, 항소인 A

변 론 종 결 2021. 12. 17.

판 결 선 고 2022. 1. 14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1. 22. 선고 2019가단3948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2015. 5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. 7. 2. 접수 제9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그에

다른 원상회복청구를 취하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 제3면 나항의 “2018. 12. 27.”을 “2019. 4. 9.”로, 제3면 다항을 “다. B는 2015. 7. 2.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2015. 5. 29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. 7. 2. 접수 제90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처분행위’라 한다).”로, 제4면부터 제5면까지 중 “이 사건 각 처분행위”를 “이 사건 처분행위”로, 제5면 제16행 “상속협의 내지 증거계약”을 “증여계약”으로 각각 고치고(이로써 이 법원에서 취하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제외함),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I 주식회사(이하 ‘I’라 한다)가 2018. 1. 8.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부동산가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,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J유한회사가 수임사인 I를 통하여 2018. 1. 8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부동산가처분을 진행할

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,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원리금채권을 양도한 회사는 J회사나 I가 아니라 소외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가 수령한 위 통지는 이 사건 원리금채권과 무관한 B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에게 보낸 통지로 보일 뿐이다.

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의 소 일부 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. 그러나 피고는 소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또는 늦어도 원고가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진술할 때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, 이로써 소의 일부 취하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다. 따라서 피고의 부동의 의사표시는 부동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.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).

재판장 판사 양상익, 판사 전보경, 판사 김희수